

이 자료는 2005. 7. 13(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資 料	생 산 일	2006년 7월 12일
		생산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안용린(2110-2210)
		담 당 자	김석오(2110-2218)

題 目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제정 추진

- ☐ 재정경제부는 최근 타결된 한·싱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향후 체결되는 FTA의 효율적인 국내이행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5. 7. 13 ~ 7. 22) 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한·싱 FTA 국회비준안과 연계 처리할 계획임
- ☐ 이 법안은 대다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관세관련 주요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 FTA 체결국가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확인 등 통관절차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를 정하여 역내 교역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관세관련 주요내용: 관세철폐, 긴급관세조치,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 ☐ 한·칠 FTA의 경우 최초 협정임을 감안, 한·칠 FTA 이행에 한정하는 관세특례법을 제정하였으나
-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매 FTA시마다 별도의 이행법 제정이 곤란하여 일반특례법 형태로 추진

※첨부: FTA 관세특례법(률)안 주요내용

FTA 이행 관세특례법(률)안 주요내용

1 제정배경

□ 최근 타결된 한·싱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중인 諸FTA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하여 법률체계 정비 필요

○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협정은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협정에서 국내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이행법률이 요구

**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도 이행법 제정·운영

□ 한·칠 FTA의 경우 최초 협정임을 감안, 한·칠 FTA 이행에 한정하는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나,

○ 다수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매 FTA 체결시 마다 별도의 이행법을 제정해야 하는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법적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일반특례법 형태로 추진

□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과 보편적 이행절차는 법률에, 각국별 특이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

○ 이외에 FTA 교역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체계를 글로벌기준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선진개방형통상국가」 실현을 지원하고 역내간 공정무역 촉진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구 분	대 상 국 가	진행상황	향후계획
협정발효	칠레	'04. 4. 1 발효	
협정타결	싱가포르	'05.4.16 가서명	연내발효 목표
협상진행	일본	6차협상 완료	
	EFTA ¹⁾	4차협상 완료	협상타결('06하반기발효)
	아세안	3차협상 완료	연내상품분야 타결목표
사전협의	캐나다	2차협의 완료	조속한 시일내 공식협상 개시 되도록 의견조율중
공동연구	멕시코	5차연구 완료	
	남미공동시장 ²⁾ (Mercosur)	1차연구 완료	
	인도	2차연구 완료	
민간연구	중국	'05공동연구개시	향후 2년간 공동연구
	한·중·일 3국간 FTA	'03공동연구개시 (중국측 제외)	'05 연구 완료

¹⁾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자유무역협정연합체

²⁾ 남미공동시장: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4개국 경제공동체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협정 대상품목별 협정세율

□ 한·싱 FTA 등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양허계획에 따라 품목별로 적용되는 협정관세율 규정

* 한·싱 FTA: 전체 11,261개 품목중 10,315개(91.6%) 품목에 대하여 10년내 관세철폐 되며, 이 중 59.7%인 6,724개 품목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즉시 관세철폐

○ 협정에는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대상물품과 연차적인 관세감축비율만을 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에 실제 적용할 구체적인 품목별 양허세율은 국내법령으로 마련 필요

【한·싱 FTA 우리나라의 관세양허 개요】

양허 카테고리	전 체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즉시철폐	6,724 (59.7)	6,304 (68.8)	232 (16.0)	56 (13.8)	132 (53.7)
5년철폐	2,009 (17.8)	1,487 (16.2)	358 (24.7)	135 (33.3)	29 (11.8)
10년철폐	1,582 (14.1)	1,125 (12.3)	377 (26.0)	37 (9.1)	43 (17.5)
소 계	10,315 (91.6)	8,916 (97.4)	967 (66.6)	228 (56.2)	204 (82.9)
양허제외	946 (8.4)	242 (2.6)	484 (33.4)	178 (43.8)	42 (17.1)
합 계	11,261	9,158	1,451	406	246

【관세양허물품의 관세감축율(백분율)】

	Y0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즉 시	100										
5년철폐	16.7	33.3	50.0	66.7	83.3	100					
10년철폐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한·싱 FTA 관세양허 주요대상물품】

구 분	품목수 (비율)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즉시철폐	6,724 (59.7)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철강, 자동차, 선박, 섬유류 등	제분용 밀, 사탕무·수수, 팥유 등	연어, 홍합, 냉동해조류 등	석재류, 원목, 단판 등
5년철폐	2,009 (17.8)	석유아스팔트, 클리세롤 등 유기화학품, 면도기, 전기다리미 등	곡류가공품, 커피, 초콜렛 등	염장품, 통조림 등	대바구니, 부채살 등
10년철폐	1,582 (14.1)	염화수소, 염화암모늄, 포름산 등의 유기화학품, 전동기 등	살구, 딸기, 콩, 감자, 무, 인삼, 주류 등	고등어·대구 등 일부 냉동품, 쥐치포 등	제재목, 성형목재, 파레트 등
소계(10년내 철폐)	10,315 (91.6)	-	-	-	-
양허제외	946 (8.4)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볼베어링, TV 수신기 등	쌀, 사과, 배, 양파, 마늘, 쇠고기 등	양식용 활어 및 패류, 열대관상어 등	합판, 섬유판 등
계	11,261 (100)	-	-	-	-

나 국내산업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대국산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제품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 심각한 산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 협정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조치를 중단하거나 일정한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도입

다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결정기준

- 체약상대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등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 수출입여부 판단에 필요한 특혜원산지기준 마련

◆ 원산지판단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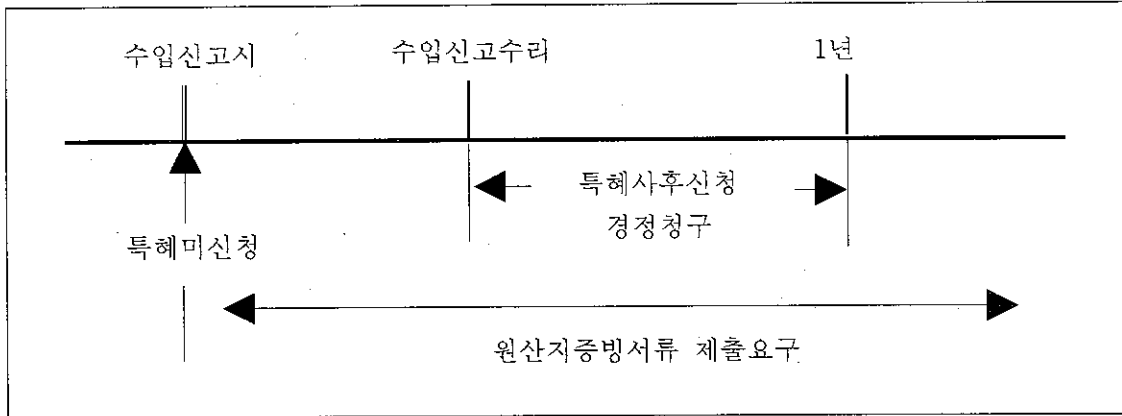
- 세번변경기준: 당해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수입원부자재의 稅番(HS code)과 가공제품의 稅番이 일정단위이상 변경된 경우 원산지 인정 (예: 원유(HS 2709)를 수입하여 휘발유 (HS2710)을 생산한 경우 세번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 부가가치기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예: 45~55%)이상의 부가가치(附加價值)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 인정
- 주요공정기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주요공정이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예: 의류제품의 경우 제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라 특혜관세 적용절차 및 원산지사전심사신청제도

- 특혜관세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게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후에도 예외적으로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 확대

* 현행 관세법상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혜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적용도 불인정

<협정관세 사후적용 흐름도>



- 특혜관세 신청대상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 결정

마 우회수출입 확인을 위한 원산지검증제도

- 특혜관세 심사 및 우회수출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검증을 요청하거나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조치

-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

- 원산지 사실과 다른 경우
-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세관장의 원산지조사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등

사 협정의 통일적 이행을 위한 국가간 관세협력

- 협정의 통일적 이행을 위하여 양국 관세당국간 상호협력에 관한 법적근거와 협력절차 마련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보교환, 원산지검증지원에 관한 사항과 양국 관세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아 수출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관세상호협약제도

- 체약상대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수출상품 또는 진출기업의 권익확보를 위하여,
 -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기업의 신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양국 관세당국간 협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